

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에 관한 지침

- 제1조** (목적) 이 지침은 학점교류에 관한 내규 제4조 6항에 따라 그 세부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** (이수범위) ① 학기 중 또는 계절수업 기간 중에 개설되어 있는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한다.
<개정 2012. 11. 8., 2014. 1. 28.>
- ② 학기당 2과목 이내, 졸업 시까지 15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.<개정 2012. 11. 8.>
- ③ 학점신청은 소속대학 신청학점과 합산한다.
- 제3조** (자격) ① 사이버대학교 학점교류는 2학년 이상 재학생인 경우에 허락한다.<개정 2012. 11. 8.>
- ② 군복무자 학점취득 제도에 의한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기간 중에도 학점교류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1. 8.>
- 제4조** (학점교류 참여대학) 서울신학대학교, 열린사이버대학교 컨소시엄에 가입한 19개 대학교를 회원교로 한다.
- 제5조** (수강 및 의무) ① 학점 교류학생은 정해진 수강신청기간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② 수강신청에 필요한 시스템사용료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한다.
- ③ 학점교류학생은 교류대학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제6조** (취득학점 인정) ① 학점교류학생이 취득한 학점은 과목당 3학점을 인정한다.<개정 2012. 11. 8., 2014. 1. 28.>
- ② 군복무자 학점취득 제도에 의한 경우에는 강의 개설 기준으로 취득 학점을 인정하되, 성적은 복학일 기준으로 적용한다.<신설 2012. 11. 8.>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지침의 개폐) 이 지침의 개정 및 폐기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2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변경지침은 2014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